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21 발의연월일: 2022. 8. 18.

발 의 자:이용선·강득구·김영호

심상정 · 용혜인 · 윤미향

이용빈 · 이학영 · 전혜숙

홍성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,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(伴侶)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. 이에 현행 「동물보호법」도 '동물'과 별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'반려동물'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·사고·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 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 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반려동물에게 질병·사고·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

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22조의5 신설 등).

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##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를 제22조의6으로 하고,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5(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·사고·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(이하"반려동물돌봄휴가"라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
  - ② 반려동물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5일로 하고,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.
  - ③ 사업주는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반려동물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반려동물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5(근로자의 반려동물 돌	
	봄을 위한 지원) ① 사업주는	
	근로자가 「동물보호법」 제2	
	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의	
	질병 · 사고 · 노령으로 인하여	
	긴급하게 그 반려동물을 돌보	
	기 위한 휴가(이하 "반려동물	
	돌봄휴가"라 한다)를 신청하는	
	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	
	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	
	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	
	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	
	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	
	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	
	<u>다.</u>	
	② 반려동물돌봄휴가 기간은	
	연간 최장 5일로 하고, 근속기	
	간에 포함한다. 다만, 「근로기	
	준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	
	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	
	제외한다.	
	③ 사업주는 반려동물돌봄휴가	
	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	

제22조의5(일·가정 양립 지원 제22조의6(일·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) (생 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- 1. ~ 8. (생 략) <신 설>

9. (생략) ③ • ④ (생 략) 제39조(과태료) ① • ② (생 략)

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
- ④ 반려동물돌봄휴가의 신청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기반 조성) (현행 제22조의5와 같음)

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----.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8의2.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 여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이유 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9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제39조(과태료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9. (생략)
- ④·⑤ (생 략)

3	 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8의2.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반려동물돌봄휴가의 신청을받고반려동물돌봄휴가를허용하지아니한 경우
- 9. (현행과 같음)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